

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

- 산업집적법 개정·공포(1.9) 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을 2월 7일(수)부터 입법예고 한다.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①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·보완하고 ②지난 1.9일 개정·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.

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*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.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설립신고 완료 후 5년간 처분이 제한

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되었다. 우선,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, 부동산투자회사,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하였다.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
산업부는 입법예고('24.2.7~'24.3.18)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입지총괄과(spetrus@korea.kr)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종우 (044-203-4430)
		담당자	사무관	신현우 (044-203-4432)
			사무관	안근영 (044-203-4409)

참고**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****□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·보완**

구분	개정 내용	관련 조항
1	집합건물 등에 입주하는 공장은 해당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함	제2조제2항제4호
2	법무·회계·세무 관련 서비스업, 기타금융투자업 등 서비스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 확대	제6조제5항
3	소규모 제조업(빵, 커피 등 제조)의 지산센터 지원시설구역 입주 허용	제36조의4제2항제1호
4	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 완화 (입주기업체의 70% 이상 또는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% 이상)	제38조제3호
5	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함	제49조제1항제2의3호

□ 개정법률(1.9) 위임사항 등 반영

구분	개정 내용	관련 조항
1	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·고시권자 변경 등 (산업부장관→시·도지사)	제28조, 제29조
2	산학융합지구 지정·고시권자 변경 등 (산업부장관→시·도지사)	제29조의5, 제29조의6
3	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대상 산단 규정 (준공 후 10년 경과된 국가·일반산단 중 관리권자 고시)	제43조의3 신설
4	자산유동화 시 부동산금융 투자 주체 규정 (금융투자업자, 부동산투자회사, 공공기관)	제57조의2제1항 신설
5	자산유동화 시 처분제한 기간(5년) 부여	제57조의2제2항 신설
6	자산유동화 시 산업용지 가격상승분 환수 (처분제한 기간 내 자산유동화 후 5년 시점 상승분의 50%)	제57조의2제3항, 제4항 신설
7	자산유동화 시 입주기업체 및 투자업자·투자회사 사업 의무 (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후 5년간 해당 사업 영위)	제57조의2제6항 신설
8	자산유동화 종료 시 산업용지 등 우선 매수권 부여 (입주기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)	제57조의2제8항 신설
9	시·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·고시하는 산단 규정 (지정면적 330만㎡ 이상 또는 시·도지사 필요성 인정 산단)	제58조의2제2항 신설